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11. 01. 0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공통 보안관리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내의 모든 연구수행기관(센터, 사업단 등)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 2 장 보안관리 체계

제 3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관리 심의와 관련된 연구보안심의위원회 간사는 산학협력지원부 부장이 담당한다.

제 4조(연구보안관리 담당관)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담당관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한다.

제 3 장 보안등급 분류

제 5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과제
4. 국방·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보안등급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안 조치

제 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제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6.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조(보안관리대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사고 처리

제10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책임 및 위반에 따른 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연구보안심의위원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공통 보안관리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연구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